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517)

2020.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승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17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승미 의원 발의(9명 찬성)

나. 제출일자 : 2020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동물사육현장 및 동물원, 동물카페 등에서 동물 습성에 반하는 행위 강요 및 부상 방치의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 범위의 확대 및 실질적인 동물복지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목적의 근거법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동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에 따른 동물로 규정하며, 동물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든지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정의를 명시함 (안 제2조)

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시설·규정 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함을 명시함 (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등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나 일부 동물사육현장 및 동물원, 동물카페 등에서 동물 학대 및 방치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 범위의 확대 등 실질적인 동물복지 구현을 위하여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관계법률검토

- 개정안은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의 근거법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동물의 관리 및 보호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그러나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의 근거법인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¹⁾으로 하고 있음으로 입법취지가 상이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항을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존재함.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p>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2) 각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조례로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위법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u>동물보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2. ~ 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동물"이란 「<u>동물보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u>1의2.</u> ----- -----<u>제1호</u>----- ----- ----- ----- ----- -----.</p> <p>2. ~ 9. (현행과 같음)</p>

나. 동물원·수족관 및 동물 전시업 등에서의 동물보호 원칙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은 2020년 5월말 기준 총 7개소이며, 동법 제7조(금지행위)³⁾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3)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의 입법취지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동 조례는 제1조(목적), 제3조(시장의 의무),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 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 조항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28조(동물보호 등의 원칙)에서 동물원의 동물, 관람·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물전시 등에서 동물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5조 등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등의 원칙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개정안 제28조(동물보호 등의 원칙)제4항에서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 등에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 조례 개정안 >

제28조(동물보호 등의 원칙)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4)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6조5)의 식품접객업소 시설등록기준에서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업종의 시설은 분리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참조)
- 이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시설’ 및 ‘동물을 전시하는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불법 시설을 의미함으로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5)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종합의견

-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동물보호 등을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추가하고, 동물보호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상이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다만,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인 동물의 보호, 학대방지 등과 관련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서울시 등록 동물원·수족관 현황

(’20.5월말 기준)

구분	동물원명	동물원 소재지	최초 설립일	동물원 등록일	운영	실형 어류	형태
동물원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로 216	1973.5.5	2018.5.30	공공 (법인)	실내외형	전시 관람형
동물원	더쥬 (THEZOO)	강동구 양재대로 1299	2016.11.4	2018.5.30	민간 (법인)	실내형	전시 관람형
동물원	헬로애니멀	도봉구 마들로601층 119호	2018.9.7	2018.9.7	개인	실내형	전시 관람형
동물원	(주)주렁주렁	영등포구 영중로15 타임스퀘어	2019.7.17	2019.7.17	민간 (법인)	실내형	전시 관람형
수족관	코엑스 아쿠아리움	강남구 영동대로 513	1999.4.1	2018.5.30	민간 (법인)	실내형	전시 관람형
수족관	아쿠아 플라넷63	영등포구 63로 50	1986	2018.5.30	민간 (법인)	실내형	전시 관람형
수족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송파구 올림픽로 300	2014.9.8	2018.5.30	민간 (법인)	실내형	전시 관람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 4. 13.>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